



은행용

여신(□기한연장, □조건변경)신청서

계	대리	과장	차장	부점장

IBK저축은행 앞

년 월 일

본인은 귀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아래 여신에 대한 거래조건(연대보증인 교체·면제포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1. 조건 변경하고자 하는 여신 내용

차입일자	여신과목	여신한도	약정기일	적용금리	비고(계좌번호, 보증내용 등)

2. 조건 변경(보증인 교체·면제 포함, 해당 사항만 기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약정기일		
금리변동주기		
적용금리		
상환방법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보증인 변경		
담보물 변경		
기타		

변경사유 :

본인	(인) (TEL :)	본인확인
주소		
연대보증인	(인) (TEL :)	본인확인
주소		
연대보증인	(인) (TEL :)	본인확인
주소		
담보제공자	(인) (TEL :)	본인확인
주소		

- 주) 1. 기한연장으로 인하여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금리변경내역도 조건변경내용에 포함할 것.
 2. 조건변경내용이 보증인 교체(면제)인 경우 신·구 연대보증인이 모두 서명(날인)하되, 연대보증인 앞에 "신" 또는 "구"를 표기하여 신·구연대보증인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제인 경우에는 변경후 란에 "면제"라 기재할 것.
 3. 보증인 교체(면제)인 경우에는 조건변경하고자 하는 여신내용의 비교란에 보증종류, 보증한도 등을 기재하며, 보증인추가인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보증인추가"라고 기재할 것.
 4. 한도거래의 조건변경은 추가약정서(한도거래조건변경용)로 운용할 것.
 개별거래의 조건변경은 본 조건변경신청서를 사용하며, 한도거래의 조건변경은 추가약정서(한도거래조건변경용)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기한연장이라 함은 상환기간의 연장을 의미하고 한도거래의 기한연장은 한도거래기간의 연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도거래인 경우 상환기간의 연장은 있을 수가 없으며, 신규에 준하여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특정일자 약정서에 의한 상환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함.